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7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김동아 · 최혁진 · 김문수
허성무 · 양문석 · 안도걸
임호선 · 이해민 · 정춘생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 ·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

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71조(소득월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u>